

## 공사잔대금 청구 및 하자담보책임 청구

**사건 번호**    중재 제08111-0102호(본신청)

**사건 번호**    중재 제08111-0144호(반대신청)

구 분	내 용	
원 인	본 신 청	공사잔대금 청구
	반대신청	하자담보책임 청구
품 목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신 청 금 액	본 신 청	800,000,000원
	반대신청	2,212,107,842원
판 정 금 액	본 신 청	800,000,000원
	반대신청	956,507,878원
판 정 일	2009. 3. 10.	
처 리 기 간	218일	

### 판 정 주 문

1.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은 신청인(반대피신청인)에게 금 800,000,000원 및 그 중 각 금 200,000,000원에 대한 2006. 10. 1., 2006. 11. 1., 2006. 12. 1., 2007. 1. 1.부

- 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반대피신청인)은 피신청인(반대신청인)에게 금 956,507,878원 및 이에 대한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중재비용은 본신청과 반대신청을 합하여 2등분한 후, 그 1은 신청인(반대피신청인)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은 신청인(반대피신청인)에게 금 800,000,000원 및 그 중 금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반대신청취지

1. 반대피신청인(신청인)은 반대신청인(피신청인)에게 금 2,212,107,842원 및 이에 대한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반대피신청인(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 정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공동사업의 약정

□□□□□(현 ■■■■■부)는 2004. 2.경 □□□□□ 공고 제2004-56호로 2004년도 ●●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를 하였던 바,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구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지정된 ‘고입체규칙성 폴리부틸렌 중합체 및 제조공정기술 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신청인이 주체가 되어 지원하여 2004. 12.경 신청인은 세무주관기관으로, 피신청인은 참여기업으로 각 선정되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한 사업의 요체는 피신청인이 가진 특허권<sup>1)</sup>과 신청인의 ○○○○플랜트 건설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 및 노하우를 결합하여 당시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인 폴리부텐-1 수지 제조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이후 상업적 가치가 있는 대량생산까지 가능한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하며 그 과정에서 축적시킨 기술의 판매 또는 직접 생산을 통하여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

1) 피신청인은 이후 2005. 2. 12 대한민국 특허 제0472771호 ‘고입체 규칙성 폴리부텐-1 중합체 및 이의 고회성 제조방법’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당시는 출원상태에 있었다.

## 나.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도급계약

## 1) 도급계약의 체결 및 수정

위 공동 사업 추진의 초기단계 사업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우선 상업 공장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안전성 검토가 가능한 최소 규모의 폴리부텐-1 시험생산을 위하여 파일럿 플랜트(이하 '본건 플랜트'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피신청인<sup>2)</sup>이 도급인, 신청인이 수급인으로 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본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건 도급계약은 2004. 12. 29. 체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금액 : 1,837,000,000원
- 공사기간 : 2005. 12. 31. 이내
- 도급공사의 범위 : 상세설계, 기자재구매, 건설공사 및 시운전지원 - 일괄 턴키공사
- 역할 분담 : 피신청인 - 반응기 핵심(core)기술 제공  
신청인 - 분리 및 제품화기술 개발수행
- 상세업무범위 : 추후협의, 확정된 업무범위(scope of work) 및 관련회의록 에 따름
- 보증사항 : 성능보장, 설계보증(수급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설계기준에 따라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보증함), 하자보수보증(시운전 완료일 후 12개월 또는 기계적 준공일 후 18개월 중 선택도래기간)

2) 애초의 도급인은 주식회사 △△△이었으나 주식회사 △△△은 2005. 6. 18 피신청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

한편 본건 도급계약은 4차에 걸쳐 수정되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차 수정계약

계약일 : 2005. 9. 15.

주요 내용 : 공사금액 1,260,000,000원 증액

공사현장을 ▽▽ ▲▲군 소재 ☆☆산업주식회사 ▼▼공장 내로 변경

· 제2차 수정계약

계약일 : 2006. 3. 16.

주요 내용 : 공사기간을 2006. 5. 31.로 연장

· 제3차 수정계약

계약일 : 2006. 4. 14.

주요 내용 : 공사금액 56,000,000원 증액

· 제4차 수정계약

계약일 : 2006. 5. 30.

주요 내용 : 중기거점기술개발과제 성공 확인시 성공보수금 230,400,000원

추가지급

대금지불조건 변경 및 기술료분할 관련 협의서의 계약자 지분 1% 증율

2) 도급공사의 이행

신청인은 본건 도급계약에 따라 본건 플랜트 시공에 착수하였고, 2006. 3. 23. 본건 플랜트의 기계적 완성(Mechanical Completion, M/C)을 달성하였으며 본건 플랜트는 2006. 5. 31.경 일용 작동준비완료(Ready for Feed-in)상태에 도달하였다.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6. 5. 31. 준공완료확인서에 상호 서명하였고, 피신청인은 2006. 6. 7. 신청인에게 과업의 성공을 통보하였다.

## 2. 본 신청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이 본건 플랜트의 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금 803,057,534원<sup>3)</sup>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금 800,000,000원<sup>4)</sup>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 2) 피신청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과 함께 준공완료확인서에 상호 서명하였고, 과업의 성공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도급계약상 신청인은 1,000MTA 규모의 PB-1 Pilot Plant를 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한 상세 설계, 기자재구매 및 완공 후 시운전지원업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인이 실제 건설한 PB-1 Pilot Plant의 규모가 애초 약정한 규모에 훨씬 못미치는 연산 300톤 정도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이 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3) 피신청인은 제4차 수정계약에 따라 2006. 9. 1. 금 814,708,455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2006.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 200,000,000원 및 2006.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 614,708,455원을 합한 원금과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피신청인이 묵시적으로 원본에 지정변제충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동액 상당의 원본은 변제로 소멸하였고, 이자 금3,057,534원은 여전히 미지급된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의 피신청인에게 금 803,057,534원 및 그 중 금 800,000,000원에 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신청인은 2008. 11. 14.자 신청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신청금액의 원금을 금 80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대금의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룬다.

나. 판단

피신청인이 제4차 수정계약을 체결한 2006. 5. 30.의 다음날 피신청인과 준공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불과 1주일 가량이 경과한 2006. 6. 7.경 본건 플랜트시공의 성공을 통보하였는 바, 제4차 수정계약일은 본건 플랜트가 기계적 완성(Mechanical Completion, M/C)에 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06. 3. 23.로부터 2달 이상이 경과한 때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실제 건설한 PB-1 Pilot Plant의 규모가 애초 약정한 규모에 훨씬 못미치는 연산 300톤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공사비의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이 제4차 수정계약으로 추후 대금지불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시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 총액이 금 1,868,148,455원인 점을 확인하고, 추후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최소한 제4차 수정계약상의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이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에 터잡은 피신청인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4차 수정계약 등을 통하여 미지급 공사비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배경에는 신청인이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도 하고 있으나 그 항변을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비하여 조직, 자금, 신용도, 영향력 등에서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특허권을 기초로 한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된 본건 플랜트 시공계약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압박 내지 강요를 당하였다고 볼 여

지도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신청취지 기재 금액인 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3. 반대신청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본건 플랜트 시공계약의 요체는 신청인이 턴키 방식으로 1,000MTA 규모의 PB-1 Pilot Plant를 건설하는 것에 있는 바, 이때 피신청인은 반응기 핵심(core)기술을 제공하며 신청인은 1,000MTA 규모의 PB-1 Pilot Plant를 건설한 후 분리 및 제품화기술 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실제로 신청인은 설계상의 오류, 시공 상의 잘못 등으로 애초 목표의 30% 정도에 불과한 연산 300톤의 생산능력을 가지는 PB-1 Pilot Plant를 시공하였을 뿐이므로 신청인은 수급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 나) 운전도급용역비 및 정비서비스비용

신청인이 2006. 5. 31.경 본건 플랜트를 외형상 준공하여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애초 목표로 한 연산 10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이지 못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의 기술과 비용을 투입하여 2007. 3.경에야 도급계약에서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였다.

신청인은 본건 플랜트가 완성될 때까지 이에 대한 시운전 지원을 하여야 하는 바, 본건 플랜트가 외형상 준공·인도된 2006. 5. 31.부터 실질적으로 완

성된 2007. 2. 28.까지의 시운전 지원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운전도급용역비 및 정비서비스비용은 모두 신청인이 본건 플랜트의 개·보수와 개·보수 이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시험운전을 함에 있어서 지출된 신청인 직원들의 인건비로서 시운전 지원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전도급용역비 및 정비서비스비용은 전액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항목의 비용임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신청인은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신청인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한편 이 비용은 본건 플랜트의 개·보수 및 성능향상에 투입된 것이므로 하자보수비용에도 해당하여 어느모로 보나 이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전도급용역비와 정비서비스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255,239,964원이다.

순번	기 간	운전도급용역비	정비지원서비스비용
1	2006.5.1~5.31	115,392,714원	65,729,390원
2	6.1~6.30	105,273,671원	41,753,517원
3	7.1~7.31	98,518,930원	44,636,588원
4	8.1~8.31	99,403,843원	23,698,660원
5	9.1~9.30	94,613,278원	12,934,763원
6	10.1~10.31	93,924,813원	14,558,072원
7	11.1~11.30.	92,560,306원	6,423,551원
8	12.1~12.31.	91,661,259원	42,720,641원
9	2007.1.1~1.31	95,150,158원	5,075,558원
10	2.1~2.28	96,810,092원	14,400,160원
소계		983,309,064원	271,930,900원
총계		1,255,239,964원	

## 다) 플랜트 보수비

본건 플랜트가 외형상 준공된 2006. 5. 31. 이후 생산능력이 연간 1000톤에 달하지 못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보수작업을 통하여 성능을 개선해 주도록 요구하였고, 2006. 8.경 신청인도 개·보수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신청인의 개·보수작업 이후에도 본건 플랜트가 애초 목표로 한 성능을 보이지 않자 피신청인은 직접 주식회사 ●●테크 등 7개 회사에게 설비의 추가 및 추가공사를 발주하였고, 그러한 보수공사에 따라 2007. 2. 말경 본건 플랜트는 애초 목표치인 1,000MTA 규모에 달하게 되었다.

당시 주식회사 ▼▼은 고정기기 유지 보수작업과 고정기기 배관/철골·화기 작업을 하였고, ●●기계산업은 플랜트의 보온보수작업을, ●●테크는 인베터 설치관련 전기공사와 오칼 라이팅 추가설치공사, 리젠 히터 설치공사와 각종 배관 교체 및 신규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러한 공사는 본건 플랜트의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도급계약상의 하자보수의무에 따라 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지출한 플랜트 보수비용은 합계 금 610,049,000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공사명	공사업체	기간	도급 금액
1	계장공사	(주)●●테크	2006.4.14	3,960,000원
2	전기공사	(주)●●테크	2006.4.14	4,719,000원
3	T/A 관련 배관작업	(주)●●테크	2006.8.18. ~2006.9.3	13,640,000원 (부가세포함)
4	T/A 관련 배관작업	(주)●●기계산업	2006.8.18. ~2006.9.3	107,910,000원 (부가세포함)
5	공장설치도	(주)◁◁플랜트	2006.8.2	64,900,000원 (부가세포함)
6	PRESSURE VESSEL	(주)▶▶기술		24,200,000원 (부가세포함)
7	SILO STRUCTRE 설치	(주)○○프랜트	2006.9.25 ~11.6	74,800,000원 (부가세포함)
8	T/A관련공사	(주)○○프랜트	2006.10.30 ~11. 8	101,200,000원 (부가세포함)
9	T/A관련계전작업	(주)●●테크	2006.10.30. ~11.7	15,400,000원 (부가세포함)
10	히터 동체 제작 및 유니트 제작납품	(주)◇◇엔.티. 에스	2006.12.1 ~12.21.	21,120,000원 (부가세포함)
11	07-01T/A	(주)☆☆이엔지	2007.1.4. ~2.15	18,700,000원 (부가세포함)
12	T/A관련 계전작업	(주)●●테크	2007.2.5. ~2.16	22,000,000원 (부가세포함)
13	07-01T/A	(주)▲▲플랜트	2007.2.5. ~2.16	137,500,000원 (부가세포함)
합계				610,049,000원 (부가세포함)

## 라) 재료비

피신청인은 본건 플랜트의 하자보수를 위한 시험가동을 하면서 ○○(주) 및 ◆◆캐멕스(주)로부터 부텐-1 등 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사용한 바 있고, 이 재료비는 본건 플랜트를 계속하여 보수·개량하고 난 후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결국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출한 재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재료비는 합계 금 346,458,878원이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1) ○○(주)의 재료비 내역

순번	재료 내역	해당 연월	재료비
1	부텐1, 수소, 증기, 질소, 초순수	2006. 5.분	38,652,317원
2	"	2006. 6.분	19,793,282원
3	"	2006. 7.분	39,514,157원
4		2006. 8.분	3,625,755원
5		2006. 9.분	33,312,188원
6		2006. 10.분	23,813,990원
7	부텐1, 수소, 증기, 질소, 초순수, 유틸리티워터	2006. 11.분	16,330,759원
8		2006. 12.분	55,830,024원
9		2007. 1.분	61,802,638원
10		2008. 2.분	15,553,818원
합계			308,228,928원

(2) ◆◆케멕스(주)의 재료비(N-HEXANE)내역

순번	날짜	재료비
1	2006. 6. 13	2,992,000원
2	2006. 6. 29.	2,992,000원
3	2006. 7. 6.	4,587,000원
4	2006. 9. 20	4,646,950원
5	2006. 11. 21.	4,290,000원
6	2006. 12. 4.	5,720,000원
7	2006. 12. 29.	4,290,000원
8	2007. 1. 22.	4,422,000원
9	2007. 2. 22.	4,290,000원
합계		38,229,950원

2) 신청인의 주장

본건 플랜트는 파일럿 플랜트로서 완공되는 즉시 특정한 목표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분석에 그 목표를 두고 건설되는 것이다. 따라서 파일럿 플랜트에서는 애초부터 생산량이라는 항목이 큰 의미를 가지지도 않으며 신청인은 본건 플랜트를 시공함에 있어 1,000MTA 규모를 보장한 바가 없다.

본건 플랜트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사업의 주체로서 ‘고입체규칙성 폴리부틸렌 중합체 및 제조공정기술 개발’ 과제라는 최종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공동 연구개발의 수단이자 대상일 뿐 1,000MTA 규모의 달성 그 자체는 목표가 아니다.

피신청인은 본건 플랜트가 기계적 완성(Mechanical Completion, M/C)에 달한 때로부터 2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준공완료확인서 작성 및 성공통보를 하였을 뿐 아니라 2006. 6. 21.자 회의록에 ‘Modification 후 1,000톤/년

CAPA가 만족할 경우 1% 지분을 추가한다.’라고 하여 피신청인 스스로도 이미 본건 플랜트의 Modification을 예상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1,000톤/년의 생산량이 달성되지 않음이 확인된 이후인 2006. 9. 1. 신청인에게 아무런 이의나 유보도 없이 공사대금 중 약 8억원을 지급한 점, 2006. 9. 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문을 보내 본건 플랜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도 1,000MTA 규모의 달성이 본건 플랜트의 시공 과제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운전도급용역비 및 정비지원서비스 비용에 관하여, 위 각 비용은 본건 플랜트에서 연1,000톤의 폴리부텐-1 생산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비스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신청인은 본건 플랜트의 시운전지원업무를 맡고 있을 뿐 시운전(start-up)을 포함한 운전(operation)업무는 피신청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를 부당이득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플랜트 보수비에 관하여는 2006. 9. 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문을 보내 본건 플랜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 터에 하자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데다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 내지 작업과 하자보수와 관련성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며, 재료비는 본건 플랜트의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역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1,000MTA 규모의 미달성과 하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고입체규칙성 폴리부틸렌 중합체 및 제조공정기술 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각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

이 되어 관계기관에 제출한 『개발목표 및 주요개발내용』에 의하면 ‘연간 2만~4만톤급의 상업공장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안전성 검토가 가능한 최소 size인 연산 1천톤 규모의 Pilot 공정을 시공, 감리 및 시운전함으로써 상업화 규모의 폴리부틸렌 제조를 위한 최적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운전 manual을 개발’한다는 것이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에 본건 플랜트 시공에 있어서도 1,000MTA 규모를 달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있었으며 따라서 도급계약서 및 각 수정계약서의 전문에 기재되어 있는 ‘1,000MTA의 PB-1 PLANT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공동 연구개발의 수단 또는 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본건 파일럿 플랜트 시공에 있어서의 ‘일의 완성’의 의미 내지 수급인의 일의 범위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2006. 3. 23. 본건 플랜트의 기계적 완성(Mechanical Completion, M/C)을 달성하였으며 본건 플랜트가 2006. 5. 31.경 일용 작동준비완료(Ready for Feed-in)상태에 도달하여 피신청인에게 공작물을 인도하였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06. 5. 31. 준공완료확인서에 상호 서명하였고, 피신청인은 2006. 6. 7. 신청인에게 과업의 성공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이 수급인으로서 ‘수급한 일을 완성’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이에 반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도급계약상 수급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2)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 가) 운전도급용역비 및 정비서비스비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6. 3. 28. 서비스 지원과 공장운전 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신청인이 구하는 운전도급용역비 및 정

비지원서비스비용은 본건 플랜트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이 서비스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도급계약상 신청인은 본건 플랜트의 시운전지원업무를 맡고 있을 뿐 시운전(start-up)을 포함한 운전(operation)역무는 피신청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운전도급용역비 및 정비서비스비용을 부당이득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플랜트 보수비

피신청인은 본건 플랜트가 외형상 준공된 2006. 5. 31. 이후의 생산능력이 1,000MTA 규모에 달하지 못하자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보수작업을 통하여 성능을 개선해주도록 요구하였고, 2006. 8.경 신청인도 개·보수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신청인의 개·보수작업 이후에도 본건 플랜트가 애초 목표로 한 성능을 보이지 않자 피신청인은 직접 주식회사 ●●테크 등 7개 회사에게 설비의 추가 및 추가공사를 발주하였고, 그러한 보수공사에 따라 2007. 2. 말경 본건 플랜트는 애초 목표치인 1,000MTA 규모에 달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테크 등이 한 공사는 고정기기 유지·보수작업, 고정기기 배관/철골 및 화기작업, 플랜트의 보온보수작업, 인베터설치 관련 전기공사와 오칼라이팅 추가설치작업, 리젠히터 설치공사 및 각종 배관 교체/신설공사인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본건 플랜트 시공이 ‘수급한 일의 완성’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공사는 본건 플랜트의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청인은 도급계약상의 하자보수의무에 터 잡아 피신청인이 지출한 이 비용 전액인 금 610,049,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플랜트 보수비에 관하여 2006. 9. 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문을 보내 본건 플랜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 터에 하자를 주장하

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데다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 내지 작업과 하자보수와의 관련성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각 인정근거에 의하면 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재료비

피신청인은 본건 플랜트의 하자보수를 위한 시험가동을 하면서 ○○(주) 및 ◆◆케멕스(주)로부터 부텐-1 등 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사용한 바 있다.

아래에서 보는 각 인정근거에 의하면 이 재료비는 본건 플랜트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출한 재료비 전액 금 346,458,87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재료비가 본건 플랜트의 하자 유무와 관계없는 운영비에 불과하므로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각 증거자료의 기재만으로는 그 항변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항변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다.

신청인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론

신청인은 본건 플랜트시공 도급계약에서 정한 PB-1 Pilot Plant 시공업무를 외형상 준공하여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공사대금지급을 약속하였는 바,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피신청인은 적어도 그 약정에 의하여서라도 공사대금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의 본 신청은 상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시공 대상물인 본건 Pilot Plant가 애초 목표로 한 1,000MTA 규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신청인의 책임범위인

설계상의 오류 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플랜트보수비와 재료비 부분에 한정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지연이자율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그 기산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상사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하기로 하고, 중재비용은 각 신청의 인용율 기타 합리적 사정을 감안하여 본 신청과 반대신청을 합하여 이를 2분한 다음 각 절반씩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여 판정주문과 같이 판정한다.